금융감독원	**보 도 자 료**	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

보도	2026.11.11.(수) 석간	배포	2026.11.10.(화)

담당부서					
	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금융투자분쟁조정팀	책임자	팀 장	안태훈	(02-3145-7590)
			팀 장	김경수	(02-3145-7595)
		담당자	선 임	허준홍	(02-3145-7582)
			선 임	이석용	(02-3145-7599)
	금융투자협회 증권2부	책임자	팀 장	추승완	(02-2003-9111)
		담당자	차 장	이상훈	(02-2003-9116)

〈 제1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논의 안건 〉

증권사의 「주식정보 제공서비스」 이용시 숨어있는 이용료를 미리 확인하고 이용하세요

- 금감원 민원으로 인지된 소비자 불편사항을 금투협회 · 증권업계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서비스 개선 -

주요 내용 (요약)

◈ 증권사가 「**주식정보 제공서비스***」 이용료를 **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매매수수료에 포함**하여 부당한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민원 접수

* 종목추천, 수급 분석 등 주식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유상 제공하는 서비스

◈ 이에 따라 **금융감독원**은 해당 서비스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드러난 **투자자 안내절차 미흡**, 투자자에게 **불합리한 가입 이벤트 운영** 방식 등에 대해 업계 협의를 거쳐 **개선방안** 수립

○ 주요 개선방안으로 ❶주식정보제공 서비스 가입전-가입후 단계별 **투자자 안내**를 **대폭 강화**하고 ❷서비스 **무료체험 이벤트 종료후**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**자동 유료 전환되는 방식**의 **이벤트**를 **금지**하는 방안 마련

◈ 금번 개선으로 투자자가 '주식정보 제공서비스' **이용에 따른 비용** 등을 **명확히 인지**할 수 있게 되어 **투자자**의 **불필요한 수수료 부담**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

○ 향후 금감원은 증권사의 **불합리한 영업관행** 및 **숨어있는 투자자 부담** 등을 지속적으로 **발굴·개선**하는 등 **투자자의 권익제고**를 위해 노력할 방침

Ⅰ. 추진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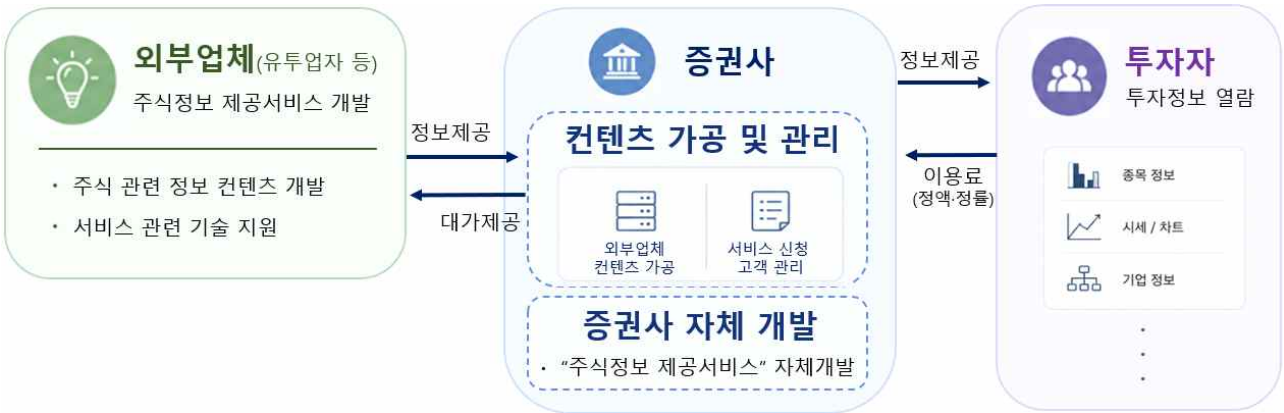
□ 최근 금융감독원은 「**주식정보 제공서비스(이하 '서비스')***」 관련 **민원****이 **접수**됨에 따라 증권업계의 전반적인 **서비스 운영 현황**을 **점검**

* **종목추천·수급분석** 등의 주식정보 콘텐츠를 투자자에게 **유료로 제공**하는 서비스

** 투자자 A씨는 10년전 ★★ 증권사의 「주식정보 제공서비스」를 가입하였으나, 그 이후 증권사의 별도 안내가 없어 가입 사실을 잊은 채 **이용료**를 **지속 부담 주장**

○ 점검 결과, 서비스 가입 이후 ❶서비스 이용료 관련 안내가 **불충분**하고 ❷**무료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**후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**자동 유료 전환** 방식의 **가입 유도 이벤트** 실시 사례 등 확인

「주식정보 제공서비스」 서비스 구조도



□ 이에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의 **불필요한 수수료 부담 경감** 및 **투자자 권익 제고** 등을 위해 증권사의 서비스 운영 관행 **개선 방안** 등을 업계 협의를 통해 **마련**

Ⅱ. 서비스 현황

1 서비스 이용규모

□ 현재 "주식정보 제공서비스"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증권사는 총 12개사

○ 서비스 이용고객은 **총 10.3만명**으로 총 고객 대비 비중은 0.23%이며 **'25년중** 동 서비스 관련 **증권사 수수료 수익**은 **671억원** 수준*

* [이용자, 만명, (고객풀 대비 비중)] ('24말) 9.0(0.2%) → ('25말) 10.3(0.2%) → ('26말) 10.7연환산 추정(0.2%)
[이용료, 천억원, (영업수익 대비 비중)] ('24) 0.5(0.1%) → ('25) 0.7(0.1%) → ('26) 1.5연환산 추정(0.1%)

2 서비스제공 및 수수료부과 방식

□ **(서비스 제공) 증권사 자체적**으로 AI 등을 활용하여 종목별 수급 분석, 종목추천 등의 **투자** 관련 **정보**를 **생성**하여 **제공**하거나,

○ 복수의 **외부업체**(유사투자자문업자 등)와 **제휴계약**을 맺고 **해당 업체***가 제공한 **주식정보 컨텐츠** 등을 **투자자**에게 **전달**하는 방식

* 통상 증권사는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복수의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계약 체결

□ **(수수료 부과)** 투자자가 증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종류의 **주식정보 제공서비스** 채널 중 특정 채널 **서비스**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고

○ 증권사는 ❶1개 서비스당 대략 **0.05~0.25%**의 **정률 수수료**를 부과하거나 (기본 **매매수수료**통상 0.01~0.2% **대체** 또는 **추가**) ❷투자자가 신청한 서비스의 **개수**에 따라 **월 정액 수수료**(통상 1만원 내외, 기본 매매수수료 별도)를 수취*

* 서비스 채널 개수에 따라 이용료가 증가하는 방식

[가상 사례] 서비스 이용에 따른 투자자 비용부담 내역

☑ 투자자 A씨가 월 1,000만원 거래시 부담하는 월 비용*

* 위탁매매수수료 0.015%, 정률제 서비스 이용료 0.1%, 정액제 서비스 이용료 1만원 가정

	기본 위탁매매수수료 (서비스 미가입 時, A)	❶정률제 서비스 이용료		❷정액제 서비스 이용료	
		금액(B)	차이(B-A)	금액(C)	차이(C-A)
투자자 부담 금액	1.5천원	**10.0천원**	**8.5천원**	**11.5천원***	**10.0천원**

* 월정액 수수료 10천원 + 기본 매매수수료 1.5천원

☑ 투자자 B씨가 월 5,000만원 거래시 부담하는 월 비용*

* 위탁매매수수료 0.015%, 정률제 서비스 이용료 0.1%, 정액제 서비스 이용료 1만원 가정

	기본 위탁매매수수료 (서비스 미가입 時, A)	❶정률제 서비스 이용료		❷정액제 서비스 이용료	
		금액(B)	차이(B-A)	금액(C)	차이(C-A)
투자자 부담 금액	7.5천원	**50.0천원**	**42.5천원**	**17.5천원***	**10.0천원**

* 월정액 수수료 10천원+ 기본 매매수수료 7.5천원

Ⅲ. 현황 및 개선 방안

1 수수료 부과체계 및 안내방식 개선

□ **(현황) 증권사는** 서비스 **가입전** 및 **가입직후**에만 이용료를 **안내**하고 있으나 그 외 **고객 안내절차**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,

○ 서비스 이용료가 **기본 위탁매매수수료**를 **대체**하고 수수료율 형태로 부과되어서, 일부 투자자는 **서비스 이용료 부담사실**을 **인지** 못할 소지

□ **(개선)** 서비스 **가입사실**, 매매수수료가 아닌 **정확한 서비스 이용료** 등을 ❶**가입전**, ❷**가입후 정기**·❸**가입후 수시**로 나눠 **상세 안내**하도록 **개선**

❶ **(가입전)**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투자자에게 **가입 전·후 이용료 총액**을 예시* 활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**비교 안내**

* 예시 : 10만원 상당의 주식 30번 매매(매수·매도)시
가입전 매매수수료 vs **가입후 수수료 합산**(매매수수료 + 서비스 이용료) **총액** 비교

현 행

[주식정보 제공서비스 이용료]

구 분	HTS/MTS	ARS	반대매매
위탁매매 수수료율	0.10%	0.15%	0.3%

⇨

개선 예시

[**위탁매매수수료** 및 주식정보 제공서비스 **이용료 총합** 등]

구 분	HTS/MTS	ARS	반대매매
가입전 **매매수수료율**	0.015%	0.15%	0.3%
가입후 **수수료율 총합**	0.10%	0.15%	0.3%

* 예시 : ◆◆회사(시가:10만원) 1주를 MTS로 20번 매수 및 10번 매도시, **서비스 가입전 매매수수료는 450원**이며 **서비스 가입후 매매수수료 및 서비스 이용료 총액은 3,000원**입니다.

○ **(가입후 정기)** 정기적으로 앱 푸시(Push) 및 문자 등을 통해 **서비스 이용 사실**, 서비스 가입전후 **투자자 부담 수수료율** 등을 비교안내

- 또한, 투자자가 부담하는 **총 수수료율 안내**시 '주식정보 제공서비스 **이용료**'와 '**매매수수료**'를 구분하여 설명

현 행 **개선 예시**



○ **(가입후 수시)** 정률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MTS·HTS의 **매매수수료**를 **확인**하는 **화면**에 서비스이용료 부과체계를 추가 설명*

* (예시문구) 해당 "수수료 등"에는 **주식 정보제공 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이용료가 포함**되어 있으며 **고객센터** 등으로 **요청시 수수료 세부내역**에 대해 확인 가능합니다"

- 또한, 투자자가 수수료 세부내역 요청시 **투자자**가 **부담**한 '**기본 위탁매매 수수료**' 및 '**주식정보 제공서비스 이용료**'를 구분하여 제공(합산 안내 금지)

현 행 **개선 예시**



2 투자자에게 불합리한 이벤트 방식 제한

□ **(현황)** 일부 증권사는 서비스 **무료체험 이벤트**를 일시적으로 실시하고 이벤트 종료후 고객에게 **별도 통지 없이 유료회원**으로 **자동 전환**(Opt-in)

□ **(개선)** 무료체험 이벤트 종료시 원칙적으로 **서비스 제공**을 **종료**(Opt-out)하고 **명시적**으로 **동의한 투자자**에게만 **유료 전환** 진행

○ 이벤트 종료 前, **반드시** 이벤트 참여 **모든 고객**에게 **유료전환 여부**를 확인하고 **전환 의사**를 전달하지 않은 고객은 **서비스 제공 종료**

※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**서비스 이용 사실**을 **인지**할 수 있도록, 문자, 알림톡 등으로 투자자의 **서비스 가입사실, 해지 URL** 등 **일괄 안내 예정**

Ⅳ.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

1 기대 효과

□ 이번 개선으로 **매매수수료**로 **대체·가산**되어 투자자가 **인지**하기 어려웠던 **서비스 이용료**가 **명확히 안내됨**에 따라 **투자자**의 **불필요한 비용 부담**이 **경감**될 것으로 기대

○ 또한, 투자자가 서비스 **이용료 부과 여부** 및 **수준**을 **충분히 인지**한 상태에서 **서비스 이용여부**를 **결정**할 수 있게 되어 투자자의 **합리적 선택권**이 실질적으로 **보장**

2 향후 계획

□ **(업계 유의사항 마련)** **금감원**은 '27.1분기 중 개선 완료를 목표로, 금투협회 등 업계와 **세부 이행방안**을 **마련**하고 증권사의 **이행상황**을 **지속 점검**할 계획

□ **(금융소비자 불편 상시 개선)** 앞으로도 **금융소비자 눈높이**에서 **불편사항** 및 **불필요한 비용 부담사례** 등 증권사의 **불합리한 영업관행**을 지속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붙 임 「주식정보 제공서비스」 이용시 투자자 유의사항

1 「주식정보 제공서비스」에 가입하기 전, 이용료 부과 여부 및 부과방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

✔ 일부 「주식정보 제공서비스」는 이용료가 별도 청구되지 않고, 위탁매매수수료와 유사하게 주식 거래 금액에 비례하여 청구됩니다.



2 여러개의 서비스 신청시, 서비스 가입 개수에 비례하여 이용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

✔ 일부 「주식정보 제공서비스」는 신청 서비스 개수에 비례해 이용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✔ 신규 서비스 신청전, ❶현재 이용중인 서비스 개수, ❷추가 서비스 신청에 따른 이용료 및 총 비용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필요한 서비스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

3 이용하지 않는 「주식정보 제공서비스」는 즉시 해지하세요

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해지전까지 이용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✔ 해지 신청시 서비스 이용료 부과 중단 시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4 해당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주식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일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

✔ 종목 추천 등 주식정보 제공서비스 이용에 따른 투자결과 책임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므로 투자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

